

의안번호	2204473
의 퇴 인	윤호중 의원
회 답 일	2024.7.19.
추 계 번호	24E153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자녀장려세제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완화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자녀장려세제 신청대상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-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1,877억원, 2029년 1,136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7,417억원(연평균 1,483억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5	2025	2026	2027	2029	누적	연평균
자녀장려세제 확대 (안 제100조의28, 29)	-1,877	-1,656	-1,460	-1,288	-1,136	-7,417	-1,483

※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자녀장려금 수급자 수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00조의28, 29 (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, 자녀장려금의 산정)	○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소득기준 상향 및 지급액 인상 등 - (현행)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,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7천만원 미만, 가구원 재산합계액 2.4억원 미만 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* 최대지급액 지급 소득기준: 홀벌이 가구 2,100만원, 맞벌이 가구 2,500만원 미만 - (개정안)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연간 총소득 합계액 1억 2,000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* 최대지급액 지급 소득기준: 홀벌이 가구 2,100만원, 맞벌이 가구 4,000만원 미만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0조의28, 29 (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, 자녀장려금의 산정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
- 2024년(현행) 기준 자녀장려금은 금년 8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므로, 2024년 지급규모 추계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2023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자녀장려세제 소득기준금액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고, 자녀 1명당 최대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
 - 2024년 자녀장려금은 금년 8월 이후 지급될 예정으로, 현 시점에서는 2023년 소득기준에 따른 지급액 규모만 집계되어 있는 상황
 - 따라서 현행 및 개정안 기준의 지급규모(수급자 인원 및 총지급액)를 각각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현행 및 개정안 기준 지급규모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(2022년)를 활용한 모의실험 분석을 통해 추정
-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조세지출 규모

□ (지급 규모) 2022년은 약 51만가구에 약 4,926억원을 지급

[표 2]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추이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천가구, 억원, %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
가구수	879	743	705	578	509
(증가율)	—	(-15.5)	(-5.1)	(-18.0)	(-11.9)
지급액	7,543	6,457	6,060	4,966	4,926
(증가율)	—	(-14.4)	(-6.1)	(-18.1)	(-0.8)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-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기준연도(2023년) 기준 현행 및 개정안 기준의 지급규모를 추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- 국세통계연보 등 국세청 자료는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므로, 자녀장려세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수변화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(2021년 귀속)를 활용
 - 재정패널조사¹⁾에서 파악이 가능한 가구요건, 소득요건, 재산요건 등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반영하여 수혜대상 가구를 선별하고, 법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금액을 추정하여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지급규모 추계

(3) 추계 결과

- 자녀장려세제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3년 기준 2,413억원으로 추계됨
- 개정안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소득기준 및 최대지급액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현행 대비 수급가구수는 약 16.4만 가구 증가하고, 총지급액은 2,41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([표 3] 참조)

1) 재정패널조사는 2022년 조사자료가 가장 최근 공표된 자료이며, 2022년 조사자료는 2021년 가계의 소득과 지출 현황에 대해 조사

-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가구 수는 현행 대비 17.9% 증가하고, 총지급액은 23.4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3] 자녀장려세제 개편 효과: 대상인원 및 지급규모 (2022년 귀속 기준)

(단위: 천가구, 억원, %)

	가구	2022년 귀속 실적치	현행 (2023년 기준)	개정안 (2023년 기준)	개정안-현행 (2023년 기준)
대상자	홀벌이	430	676	676 (0.0%)	0
	맞벌이	79	322	486 (51.0%)	164
	합 계	509	998	1,162 (17.9%)	164
지급금액	홀벌이	4,186	8,220	8,220 (0.0%)	0
	맞벌이	740	3,441	5,854 (70.1%)	2,413
	합 계	4,926	11,661	14,074 (23.4%)	2,413

주: 1. 2023년(2022년 귀속) 기준으로 현행 및 개정안의 지급규모 추정

2. 개정안의 괄호 안은 현행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

자료: 2022년 귀속 지급현황은 국세청 제출자료; 2023년 기준 현행 및 개정안의 지급규모는 「재정패널 조사」 제15차 자료(2022년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9년까지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연간 가구탈락률(-11.8%)을 반영하여 지급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
 - 수급요건의 변화가 없었던 2019~2021년 기간동안 수급가구수가 연간 11.8% 감소한 것을 반영
- 자녀장려세제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5년 1,877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7,417억원(연평균 1,48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자녀장려세제 확대 (안 제100조의28,29)	-1,877	-1,656	-1,460	-1,288	-1,136	-7,417	-1,483

※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자녀장려금 수급자 수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